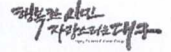


코로나19 극복 대구시민은 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1년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불임과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11.20.(금) ~ 12.9.(수),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0.12.10.(목) ~ 12.14.(월) 18:00

다. 제출방법 : E-mail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라. 제출서류 : 불임 공고문 참조

마. 협조요청사항 : 불임 공고문을 2020.11.20.부터 구·군 및 협회 홈페이지 게재
(공고일 이전 게재 불가)

불임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2020-1438). 끝.

대구광역시



수신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건축주택과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건축주택과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건축주택과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건축과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건축주택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건축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건축과장), 달성군수(건축과장), 달성군수(종합민원과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지구관리1과장),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귀하,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귀하, 한국기술사회장 귀하

주무관 송지현 건축팀장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전결 2020. 11. 18. 장이희

협조자

시행 건축주택과-23049 (2020. 11. 18.) 접수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 <http://www.daegu.go.kr>

전화번호 053-803-4621 팩스번호 053-803-4603 / songj92@korea.kr / 비공개(5)

증상시검사받기/마스크쓰기/손씻기/두팔간격건강거리두기/매일2번이상환기/집회모임회식자제/마음은가까이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1438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1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11.20.(금) ~ 12.9.(수),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0.12.10.(목) ~ 12.14.(월)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다. 공고장소 :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홈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 신청자격

가. 2020.12.9.(수)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한 기관(업체)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이 충족되는 해당하는 기관(업체)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어느
하나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이 충족되는 기관

3. 등록신청 방법

2020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기관(업체)는 2021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명부에 자동 등재될 예정이므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기관(업체) 중 점검분야 구분을 변경하거나 2021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지정제외(삭제)를 신청코자 하는 기관(업체)는 변경(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공개(2020.11.16.기준)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 1) 파일형식 : pdf 형식만 가능(zip파일 불가함)
- 2) 파일명칭 : 기관명-대표자성명

나. 신청방법 : E-mail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다. 제출처 : songi92@korea.kr 및 <https://blcm.go.kr>

라. 제출서류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양식1)
-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신청서(양식2)
- 3)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제외)
- 4)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현황(양식3)
- 5) 장비보유 현황(양식4)
- 6) 사업자등록증명서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8)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기관에 한함)
- 9)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등 교육기관의 증빙서류(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

다. 유의사항

- 1) 신청기간 외의 접수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처리 함
- 2) 신청접수확인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korea.kr 메일의 특성상 접수처에서 메일을 확인 하여도 상대방에서는 메일수신 확인이 되지 않음. “읽지않음”으로 표시되더라도 접수확인 전화 자제요망
- 3) 변경(기존 점검분야 제외 시) 및 제외 신청 시 기존 지정받은 건축물의 점검 완료 후 수리 가능함(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확인)
- 4) 이메일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모두 신청해야 접수 처리됨

4. 기타사항

- 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미달 등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 될 수 있음
-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법에 의한 건축물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하며 점검분야는 중복으로 등록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등재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라. 문의처: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건축팀(☎053-803-4621, 4623)
- 마. 점검기관 등록명부 공개 : 2020.12.18.(금) 13:00 이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내 공개

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운용 기간 : 2021.1.1. ~ 2021.12.31.

(양식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
 제외

신청서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신청 []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 미만 [] , 연면적 3천㎡ 이상부터 1만㎡ 미만 [] , 연면적 1만㎡ 이상 [] ② 안전진단: []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 미만 [] , 연면적 3천㎡ 이상부터 1만㎡ 미만 [] , 연면적 1만㎡ 이상 [] ② 안전진단: []
제외신청 []	(제외신청에 체크할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변경신청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제외) 2. 기술인력(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현황 3. 장비보유 현황 4. 사업자등록증명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함) 6.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기관에 한함) 7.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등 교육기관의 증빙서류(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양식3)

기술인력 보유현황

	인원	성명	자격	전분분야	교육이수여부	비고
총계	6명					
건축사	1명	○○○	건축사		미이수	
특급기술인	1명	○○○	특급기술인	안전관리	미이수	
건축사보	1명	○○○	건축사보		이수	
고급기술인	1명	○○○	고급기술인	건축구조	이수	
중급기술인	2명	○○○ ○○○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건축구조 건축시공	이수 이수	
초급기술인	1명	○○○	초급기술인		이수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현재 등록신청 기관(업체)에 소속여부 확인되는 서류로 농재 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

(양식4)

장비 보유현황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분야의 경우

장비 보유 목록	구비여부 (갯수)	비고
망원경	(개)	
균열폭 측정기	(개)	
레이저 거리측정기	(개)	
열화상카메라	(개)	
전자내시경	(개)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개)	
기타	(개)	기타장비 내역 기재

붙임 : 증빙자료(세부장비 사진, 임차하는 장비의 경우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고란에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 내용 기재

[세부 장비사진]

장 비 명	장 비 사 진	장비고유번호 /모델번호
망원경	(사진)	(사진)
		번호 기재
균열폭 측정기	(사진)	(사진)
		번호 기재
레이저 거리측정기	(사진)	(사진)
		번호 기재

장 비 명	장 비 사 진	장비고유번호 /모델번호
열화상카메라	(사진)	(사진)
		번호 기재
전자내시경	(사진)	(사진)
		번호 기재
측량기(수준, 각도 측정용)	(사진)	(사진)
		번호 기재

장 비 명	장 비 사 진	장비고유번호 /모델번호
기다	(사진)	(사진)
		번호 기재

- 장비고유번호, 제품번호는 확인가능 한 경우 사진 및 기재

(양식4)

장비 보유현황

※ 안전진단기관의 경우

구분	장비명	규격 및 모델번호	장비 고유번호	검사 유효기간	등록 및 등록해제일	보관장소	비고

- 구분란에는 공통 또는 진단분야 기재, 비고란에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 내용 기재
붙임 : 승빙사진(세부장비 사진, 임차하는 장비의 경우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부 장비사진]

장비보유현황(기본장비)			
장비명		연번	
제품구성			
용도			
제조국명		제조회사	
Model. No.		SERIAL No	
검사유효기간		관리번호	
보관장소		구입일자	
소유자			
전면부			
후면부			

- 장비고유번호, 제품번호는 확인가능 한 경우 사진 및 기재